

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안내문

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/ 2020.6.19.시행

- ▷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- ▷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
- ※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('20.9월)

②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

- ▷ 6.19.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

③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·처분요건 강화/2020.7.1.시행

- ▷ 무주택자: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
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
- ▷ 1 주택자: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
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

④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/보증기관 내규개정 후

- ▷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
- ▷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



서구청 지적과(☎288-4254)